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7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이개호·문금주·이정문

서삼석 • 박희승 • 민형배

천하람 • 조인철 • 김성회

위성곤 · 이언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
· 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
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·유통·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,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 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 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,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,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 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"신고하여야 한다"를 "신고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영업의 신고 등) ① (생	제6조(영업의 신고 등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	②		
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			
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		
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			
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			
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•			
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			
구청장에게 <u>신고하여야 한다</u> .	<u>신고하여야 하며 건강기</u>		
다만,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	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		
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제4	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		
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	할 수 없다		
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			
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			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			
하다.			
	.		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		